

의안번호	2212282
의 퇴 인	이광희의원
회 답 일	2025.8.25.
추 계 번호	25D4477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공무원임금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만원씩 총 2,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공무원임금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8조·제11조 및 제15조)	5	5	5	5	5	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노조위원 7명, 정부위원 7명, 전문가위원 7명 등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의무규정
	안 제11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제1항),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노조위원 3인 이내, 정부위원 3인 이내, 전문가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제2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안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재량규정 의무규정
2	안 제12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의 실무적 검토 및 관계 부처 등과 협의·조정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7조(공무원 임금 수준 실태 조사)	정부는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	—
	안 제11조(소위원회)		
	안 제15조(수당 등)		
2	안 제12조(실무협의회)	—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인사혁신처 훈령)에 따라 설치·운영 중
3	안 제17조(공무원 임금수준 실태 조사)	—	현행 예산범위에서 수행 가능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른 공무원임금위원회는 총 21명¹⁾으로 구성되는데, 본 추계에서는 노조위원과 전문가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함
- 현재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인사혁신처훈령)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정안에 따른 노조위원과 전문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다만,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현재 전체회의 참석위원 10명(노조대표 5명과 전문가 5명), 소위원회 참석위원 5명(노조대표 2명과 전문가 3명)은 인사혁신처훈령²⁾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음³⁾

1)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1.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공무원(이하 “노조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과 2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1명

나. 기획재정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인

다.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인

라.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인

마.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인

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인

3. 전문가를 대표하는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노동·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전문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제1호의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친 사람으로 하되, 형평이 맞도록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 산출 시, 현행 훈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인원은 개정안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본 추계에서 공무원임금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가 각각 3회 개최되고, 회의참석수당은 현행과 같이 35만원(회의참석수당+안전검토비)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의 회의일수는 각각 연평균 3회임

[표 2]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연도별 회의일수: 2020~2024년

(단위: 일수)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전체회의	3	2	2	4	3	14	3
소위원회	2	2	2	3	6	15	3

자료: 인사혁신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다만, 안 제17조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현행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공무원 보수 실태조사’는 현행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표 3]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예산내역

·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공무원보수규정 제3조(보수자료 조사) ⁴⁾
· 사업명: 공무원후생복지(2044-303)의 내역사업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 예산액: 4,100천원(2025년 기준)

- 2)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3) 전체회의는 총 15명(보수정책 관련 공무원 5명, 노조대표 5명, 전문가 5명), 소위원회는 총 7명(보수정책 관련 공무원 2명, 노조대표 2명, 전문가 3명)으로 각각 구성됨
- 4) 제3조(보수자료 조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그 재외공관 소재지의 물가지수, 외환시세의 변동상황 등 재외공무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인원에 위원회의 회의일수와 참석수당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제정안에 따른 공무원임금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는 21명(노조위원, 정부위원, 전문가위원 각 7명)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9명(노조위원, 정부위원, 전문가위원 각 3명)으로 구성한다고 가정하면, 회의참석수당의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인원은 전체회의의 4명, 소위원회 1명임
 - 전체회의(4명)⁵⁾: 노조위원 2명, 전문가위원 2명 등 4명임
 - 소위원회(1명)⁶⁾: 노조위원 1명임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공무원임금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노조위원과 전문가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전체회의	지급인원(A)	4	4	4	4	4	—
	지급단가(B)	0.35	0.35	0.35	0.35	0.35	—
	회의일수(C)	3	3	3	3	3	—
	소계(D=A×B×C)	4	4	4	4	4	20
소위원회	지급인원(E)	1	1	1	1	1	—
	지급단가(F)	0.35	0.35	0.35	0.35	0.35	—
	회의일수(G)	3	3	3	3	3	—
	소계(H=E×F×G)	1	1	1	1	1	5
합계(I=D+H)		5	5	5	5	5	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안 제8조에 따른 공무원임금위원회의 노조위원 7명과 전문가위원 7명에서 현재 인사혁신처훈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위원(노조대표) 5명과 공익위원(전문가) 5명을 각각 차감하였음

6) 안 제11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노조위원 3명과 전문가위원 3명에서 현재 인사혁신처훈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위원(노조대표) 2명과 공익위원(전문가) 3명을 각각 차감하였음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인사혁신처훈령)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운영방식이 변경되면 실제 재정소요액은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